

부 산 고 등 법 원

제 6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12나50445 손해배상(기)

원고, 피항소인 겸 항소인

1. 김○○

2. 박○○

원고들 주소 부산 ○○○ ○○ ○○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

담당변호사 석용진

피고, 항소인 겸 피항소인

부산광역시

대표자 교육감 임혜경

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

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2. 7. 12. 선고 2011가합24176 판결

변 론 종 결 2013. 1. 24.

판 결 선 고 2013. 2. 28.

주 문

1.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32,402,28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가. 원고들

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7,314,134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피고

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,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해당하는

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원고들 및 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, 원고들 및 피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 새로이 제출한 증거, 즉 갑 제20호증, 을가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,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)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	판사	신광렬
	판사	박준용
	판사	문상배